

제335회 임시회

2014. 10. 17.(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임순묵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10월 6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10월 7일

3. 제안이유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조항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삭제하여 도민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도로 연결허가 원상복구 및 허가취소 조항 삭제(안 제15조, 16조 삭제)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용어순화 등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도로법」 개정(법률 제12248호, 2014.1.14.,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 현행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제 사항을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현행 조례 제15조(원상복구)는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¹⁾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²⁾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제16조(허가취소)는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³⁾

1)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 ② (생략)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3)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 4. (생략)

② (생략)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중복 규정한 것은 자치법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밖에 개정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도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